



# Monthly Tax Newsletter

---

Issue 103 | January 2023

A blurred background photograph showing a person's hands working on a white computer keyboard.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stack of papers or books on a light-colored wooden desk. The overall theme is professional and focused on tax-related work.

삼정KPMG 세무본부 TKC

# Contents

	Page
<b>소득법인세 분야</b>	<b>2</b>
• [판례]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의 사업연도 익금을 산정하는 방법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은 감면기간분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감면종료 후 발생한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취소)	
<b>재산소비세 분야</b>	<b>6</b>
• [판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법인 경영참여 등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타 통신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예규] 폐차 관련 절차를 지점에서 한 경우에도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 [예규]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 [예규]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방법	
<b>지방세 분야</b>	<b>10</b>
• [예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종전에 분리과세로 과세한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b>관세 분야</b>	<b>11</b>
• [심판례] 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소득법인세 분야

[판례]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 표준의 사업연도 익금을 산정하는 방법 (납세자승)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 [사안] 원고는 2013년경 A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9.01%를, B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13.3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A회사는 B회사의 문화예술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음(“이 사건 합병”). 피고는 B회사의 문화예술 사업부문에 관한 주식의 가치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등으로 이 사건 합병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A회사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인 B회사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B회사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인 A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사건 익금규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음.
- [판단] 불공정합병 당시 어느 법인이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법인에게는 불공정합병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함께 귀속되므로 해당 법인이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는지는 그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익금 규정에 따라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순자산 개념상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을 통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지 밝힌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이 사건 익금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익금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각 이익 상당액을 모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심판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심 2022전1543, 2022. 12. 5.

**[사안]**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은 2016. 9. 2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법인 아닌 단체가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였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제1항 제1호(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2호(세무조정계산서)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처분청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그러나,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소득을 얻는 경우와 같이 당초 명의대여자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다가 이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목과 관계없이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는 결과 법인세가 과세될 수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조심 2012서3715, 2013. 1. 16.)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로 기납부한 세액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TKC 코멘트]

- 조세심판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의 처분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 (조심 2019중4592, 2020. 2. 28., 조심 2020중8060, 2020. 12. 29. 등).

[심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22서1495, 2022. 12. 13.

- [사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후 쟁점토지는 합병에 의해 2012년에 취득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부칙 제4조(2009. 5. 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쟁점부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 [판단] 쟁점부칙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로 인한 취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과 같은 합병에 의한 취득이 배제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분할등기일로 보아 쟁점부칙에 해당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9서2775, 2019. 12. 19.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합병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합병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고, 따라서 쟁점부칙 규정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례]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은 감면기간분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지, 감면종료 후 발생한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22광6256, 2022. 12. 13.

- [사안]** 청구법인은 2006. 11. 22. 구 조특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결정되어 2009~2013사업연도("이 건 감면기간")의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한편, 청구법인이 외국투자가인 외국법인 A에게 2019년 4월, 2020년 4월에 배당금("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 재원을 2011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 보아 구 조특법 제121조의 2 제3항("쟁점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여 원천징수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쟁점결손금")으로 인해 이 건 감면기간의 배당가능이익이 소멸하여 쟁점배당금이 그 배당가능이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배당금을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2022. 3. 30.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와 2020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결정·고지함.
- [판단]**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2011~2013사업연도 함께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면 결국 2019~2020사업연도에는 배당가능이익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중소기업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결손금의 소급공제방법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고, 설령 소급공제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는 결손금 보전에 있어 이월공제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에 맞지 않게 된다 할 것임. 더욱이, 쟁점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외국인투자기업 단계에서 받은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주 단계에서 상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외국투자가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고, 같은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 중에서 일부만을 배당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면 쟁점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재산소비세 분야

## [판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 (납세자승)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사안]** 코스닥 상장법인인 A사는 2005. 12. 20. 비상장법인인 B사와의 사이에 B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B사의 주주들에게 B사 주식 1주당 A사 신주 36.4625주를 발행해 주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계약’). B사의 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6. 2. 27. B사 주식 30,150주의 교환대가로 A사 신주 1,099,344주를 배정받았음(‘이 사건 주식교환’). 피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B사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된 결과 원고가 일정한 이익을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에 따라 2010. 7. 19.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 규정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변경함(‘이 사건 처분’).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그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가)목과 (나)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음.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이 사건 (나)목을 적용하여 ‘변동후 가액’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A사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전 가액’인 ‘원고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B사 주식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부분은 정당함.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나)목에 따른 변동 전·후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원심은 변동 전·후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앞에서 본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 이 사건 (나)목에 따른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이 사건 (나)목은 변동 전·후 가액의 차이를 평가차액으로 정하면서도, 그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아, 위 규정만으로는 그 ‘가액’과 이를 기초로 한 평가차액을 산정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가 있을 때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결합제도의 하나로서 그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고,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8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였음. 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에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1호)’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제2호)’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2호의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이 사건 (나)목의 ‘변동후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④ 이 사건 (나)목의 ‘변동후 가액’을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면 대차대조표 공시일 등이 그 평가기준일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변동전 가액’의 평가기준일 역시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변동후 가액’의 평가기준일과 일치 시킬 필요가 있음.

**[심판례] 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법인 경영참여 등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서4941, 2022. 12. 22.

**[사안]** 청구인은 2016. 4. 20. 현재 상장법인인 A사(“쟁점법인”) 발행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甲(“양도인”)과 상호간 주식 양도제한 및 우선매수청구권, 매도참여권 등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주주간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2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됨. 양도인은 청구인과 쟁점법인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시작되자,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B사에 1주당 000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7. 12. 19.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 및 매도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 청구인은 2017. 12. 29. 양도인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및 청구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위 주식 중 청구인이 매수한 주식을 “쟁점주식”).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상증세법 제35조가 규정하는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고,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취소 및 환급 결정함. 감사원은 쟁점계약 체결일에는 양도할 주식의 수량 및 가액 등이 정해지지 않아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12. 29.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6. 7. 28.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함.

**[판단]**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방법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내용 결정 기준이 쟁점계약에 의하여 확정되고, 청구인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청구인과 양도인이 거래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협상할 여지가 없었던 경우까지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즉 쟁점계약 규정상 쟁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모든 내용(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기준 포함)을 확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도인과 B사’가 협상한 가격 그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계약 체결일’에 매매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거래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의하여 미리 확정한 쟁점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한 2016. 4. 20.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예규]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타 통신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625, 2022. 11. 29.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초고속인터넷 및 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모뎀 등 장비임대용역,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할인하였다가 약정해지 사유 발생 시 이용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의한 이용자 할인반환금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 납부를 면제하고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이를 정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TKC 코멘트]**

- 대법원은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동전화요금·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임대료·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와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예규] 폐차 관련 절차를 지점에서 한 경우에도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사전-2022-법규부가-1020, 2022. 12. 8.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조특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본점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예규]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 2022. 12. 23.**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TKC 코멘트]**

- 기획재정부는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9, 2017. 10. 12.), 대법원도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 2022. 7. 11. 국민권익위원회는 “증여받은 재산 법원 판결로 반환됐다면 당초 부과한 증여세 취소해야” 한다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의견을 표명하였음.

**[예규]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2022. 12. 21.**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 지방세 분야

[예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종전에 분리과세로 과세한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세제과-3889, 2022. 11. 29.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토지의 매각,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부과된 재산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으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과세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매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승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분리과세로 부과되었던 재산세를 종합과세로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TKC 코멘트]**

-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 관세 분야

[심판례] 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 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2관0097, 2022. 12. 13.

[사안] 청구법인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반도체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2021. 5. 25 보세공장에 반입함. 2021. 6. 23. 수입신고 없이 사용신고 한 뒤, 청구법인은 2021. 12. 22.에 처분청에 업무상 착오로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함.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상 수입신고 한 물품이 아니므로, 보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2. 2. 16. 부가가치세 000원, 무신고가산세 000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22. 5. 12.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관세법』 제185조 제7항 및 보세공장고시 제12조 제2항에서는 보세공장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계·기구·부분품·소모품·견품 등(시설재)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내 사용할 반도체 부분품으로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함. 『관세법』상 보정은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납세신고) 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정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대상인 쟁점물품을 착오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신고를 한 후 이미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정한 무신고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를 적용하면서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점(부정행위 시 통상 4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TKC 코멘트]

- 보세공장은 특히받은 자가 관세유보 상태에서 외국 또는 내외국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외국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어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규정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음. 과거 적부심사 제2015-49호(2016. 6. 20.)에서는 쟁점물품 자체를 "보세공장 원재료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비대상으로 판단했던 사례가 존재하나,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85조 제7항 및 보세공장고시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세공장 내에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여,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에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음.
- 비록 청구법인이 착오를 인지하고 처분청에 보정을 요청하여 충분히 선량한 납세자로 여겨지나, 현행 보세공장관련 규정이나 관세법상 이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하거나 예외조항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처분 한 것으로 판단됨.

# 삼정KPMG 세무본부

## Tax Knowledge Center

###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정선아 S.Manager T 02-2112-3024 E sunahjung@kr.kpmg.com	권성욱 S.Manager T 02-2112-3543 E sungwookkwon@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	--	--

태선영  
Manager  
T 02-2112-6624  
E seonyeongtae@kr.kpmg.com

설민호 S.Senior T 02-2112-3977 E minhoseol@kr.kpmg.com	주정연 Senio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	--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http://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